

2017년 대전광역시 행복나눔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대전시에서는 대전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 “대전광역시 행복나눔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”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17년 8월 7일

대전광역시장

1 |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7년 대전광역시 행복나눔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
- 접수기간 : 2017. 8. 16(수)부터 상시모집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
- 대상인원 : 총 6,000명 (기준 선정인원 포함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
- 지원규모 : 최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지급
- 지원내용

지원 항목	구직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	
	직접비	교육비, 면접비, 자격증접수비, 교재 및 도서구입비 등
제한 항목	간접비	

※ 식비의 경우 1식 10천원, 월100천원 한도

ex) 주점, 피부미용실, 레저업소, 당구장, 보험, 대학등록금, 호텔 등
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www.youthpassdaejeon.kr)
- 선정방법 : 정량평가 + 정성평가
- 선정기준 적합여부 정량평가 후 적합자 대상 인터뷰 등 정성평가로 최종선정
- 지급방법 : 청년취업 희망카드(포인트 차감방식)

온라인 사용	홈페이지에 등록된 제휴업체 구매 시 자동승인 및 포인트 차감
오프라인 사용	본인예금 선지출 ⇒ 승인신청 ⇒ 검토 후 포인트 차감 및 현금입금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참여 시 수급자 제외, 서비스 제한,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해당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바람.

2 | 구비서류

-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.
- 신청일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(영수증)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1부
 - 제출대상 : 주민등록 등본 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원
 - * 본인등본 이외의 자가 납부하는 경우 : 해당 건강보험료 증빙서류 제출
- 기타(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제출)
 - 18. 2월 졸업예정자(졸업예정증명서), 방통대·사이버대 재학생(재학증명서), 졸업유예자(수료증 또는 졸업예정증명서+성적증명서)
-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,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
- 기관 및 인터넷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.

※ 구비서류 발급방법은 붙임을 참고하기 바람.

3 | 신청자격 요건

- 청년실업자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,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 -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
 -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자
 -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(가구 중위소득 150% 미만)

□ 신청제외대상

-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(휴학생 포함)
 - ※ 단, 18. 2월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신청가능
 -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자) 또는 실업급여수급자
 - 취업성공패키지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취업관련 지원사업 참여자
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가구 청년
- ※ 예) 중위소득 150% 건강보험료 기준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직장가입자	76,490	129,385	168,468	209,322	248,972
지역가입자	73,165	147,166	188,200	231,505	269,299
혼합가입자	76,509	131,267	171,272	214,233	258,317

4 | 신청 절차

- ① 인터넷 홈페이지(www.youthpassdaejeon.kr) 접속 ⇨ ② 회원등록【개인 정보 입력, 약관동의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)】⇨ ③ 구비서류 제출
⇨ ④ 활동계획서 작성(신청동기, 구직활동계획, 구직활동비 사용계획)

5 | 선정 기준

- 선정기준 : 정량평가 + 정성평가
- (정량평가) 제출서류 근거로 선발기준 적합여부 평가

평가항목	심사 내용
연령	·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여부(주민등록 등본)
거주기간	·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거주 6개월 이상 여부(주민등록 초본)
미취업	·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(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) ※고용보험 가입사실 없는 경우 :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가구소득	·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(동거인 제외)의 전월분 건강보험료 합계가 중위소득 150%미만 여부
기타	· 필수 및 추가요구 서류의 제출여부 등

- (정성평가) 정량평가 적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등
 -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상담사와 개별 인터뷰 실시
 - 상담사와 제출서류를 근거로 구직계획 및 진로 등 상담실시
 -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·상담
- (최종선정)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결정으로 최종선정

6 | 평가 및 최종선정 일정

- 일정 : 월 2회 평가 및 선정 실시
 - 접수순서에 따라 매월 2회 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
 - 최종선정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함.
 - 결과안내 : 인터넷 홈페이지(www.youthpassdaejeon.kr) 접속 후 확인
 - 매일 또는 문자를 통해 개별통보 병행
- ※ 최종선정자 카드발급 등 추후일정 및 유의사항 별도 통보

7 | 기타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반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고,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기간 중 취업·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(중단)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운영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락이 안되거나, 회신거절의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지원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, 서비스 제한,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(☎042-719-8325~8) 또는 대전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실(☎042-270-3282)로 문의바랍니다.

(붙임)

구비서류 발급방법

구비서류	발급방법
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(http://www.minwon.go.kr) 등
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이용 회원가입 → 조회 →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(공인인증서 필요) ※ 고용보험 가입기록 없는 경우 :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화면 캡처사진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(예정증명서) 1부 첨부
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고객센터 이용 : 고객센터(1577-1000) → 본인확인 → FAX즉시발급인터넷 이용 : 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회원가입 → 방문자별 맞춤메뉴(개인) → 조회 및 발급 →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스마트폰 앱 이용 : 구글플레이스토어 접속 → “M건강보험” 앱설치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※ 인터넷 및 앱이용 시 제출기관(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) 팩스송부 가능
졸업(예정)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(http://www.minwon.go.kr)해당대학 민원실 등 <p>* 졸업예정자는 '18.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</p>
수료증 성적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(http://www.minwon.go.kr)해당대학 민원실 등

※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,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.

※ 기관 및 인터넷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.